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6
----------	------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최윤희 의원 (찬성자 20명)
- 나.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 라. 상 정 일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윤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하였음(안 제5조의4).
- 안 제5조의4는 「평생교육법」(이하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에게 부과된 의무인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등 의무화)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u> <u>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u> <u>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u> <u>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u>

※ 「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③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하여 법(제28조제3항)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의4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총 16개 시·도 조례에 관련 규정(안전조치 의무화)을 반영하고 있음(별첨).
- 안 제5조의4 제1항은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을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설 이용자 손해보상에 대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의 신속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 가입 기준은 16개 시·도 모두 동일한 금액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이용자 손해보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규정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서울시민대학 캠퍼스(중부권, 동남권, 모두의학교, 다스가는캠퍼스) 모두 '1인당 배상금액 3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30억원 이상'으로 보험가입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였고,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평생교육시설 총 1,439개소('25.3월말 기준) 중 803개소에서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되어 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음¹⁾.

※ 교육청은 기준(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에 미달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갱신시 배상금액을 상향토록 조치하였음.

- 본 개정안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기관 설치자 및 운영자에 대한 이용자 안전조치 이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동의한다는 의견(원안 동의)을 제출하였음.
- 다만, 법에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그 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법 제42조), 지도·감독(법 제42조의2) 권한은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례 개정 시 서울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8729호(2025.4.11.)에 따르면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시 소재 평생교육시설은 총 2,871개이나, 비대면교육을 실시하는 원격평생교육시설(1,432개)을 제외한 총 1,439개를 대상으로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여부를 조사함. 자료 미제출(636개)에 대해서는 1) 최초 설립시에는 보험가입 하였으나, 설치자 지위승계 이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2) 신설 신고 수리로 인해 보험 가입이 진행 중인 경우, 3) 시설의 기간 내 회신이 없어 확인이 불가한 경우 4) 현재 운영하지 않아 휴원 및 폐쇄 예정인 경우(*지도.점검 예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윤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최윤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민병주, 박 석, 박중화,
송경택, 신동원, 유만희,
유정인, 이성배, 이종환,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20명)

1. 제안이유

-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시설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및 사고 발생 시 보상 조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이용자 안전조치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보험 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 ① 법</u> <u>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u> <u>관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u> <u>가입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u> <u>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u> <u>1.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u> <u>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u> <u>②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및 운</u> <u>영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u> <u>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u> <u>보상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u> <u>하여야 한다.</u>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의4(이용자 안전조치)에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사안을 신설함에 따라 비용 발생의 여지¹⁾가 있어 서울시 관련부서(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유선상 문의 및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평생교육기관에서 보험을 기가입하고 있으며, 가입 비용 또한 기관에서 부담하므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재정소요영향 검토 필요성] 보험가입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 시 서울시 부담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